

## ◎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공고제2023-447호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법률 제19416호, 2023. 5. 16., 일부개정)의 후속 조치로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

#### 2. 주요내용

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변경보고 신고 서식 규정(안 제6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

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21) 세종시 가림로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3차 4층  
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
- 전자우편 : nnnnn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709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(전화 (044) 204-7706, 7708, 팩스 (044) 204-770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##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 (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) 영 제11조의16제3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”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신 설>

##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(발행, 중요사항 변경) 보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        | 처리일 | 처리기간   | 30일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보고인  | 업체명          |     | 대표자    |     |
|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|     | 법인등록번호 |     |
|      |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|     |        |     |
|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     | 전자우편   |     |
|      | 소재지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|

|      |   |  |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|--|------|-----------|
| 보고내용 |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및 발행수량<br>(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기재) |  | [성명] | (주)       |
|      |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  |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|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   |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| 창업주 보유 보통주 납입 여부  |  |      | [ 여 / 부 ] |
|      | (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) 전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| 전환사유  |  |      |           |

누적 투자유치금액 및 창업주 지분을 변화  
(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모두 기재)

| 투자일자 | 투자유치금액<br>(특수관계인 포함) | 투자유치금액<br>(특수관계인 제외) | 투자 전<br>창업주 지분율 | 투자 후<br>창업주 지분율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|
|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|
| 계    | 원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%               |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14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[ ] 발행 [ ] 중요사항 변경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

|          |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|
| 보고인 제출서류 | 1. 벤처기업의 정관 1부<br>2. 주주총회 의사록(정관 변경 및 복수의결권주식 발행) 각 1부<br>3.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----|--|-----------|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제6조(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) 영</u><br><u>제11조의16제3항에서 “중소벤</u><br><u>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</u><br><u>서”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</u><br><u>다.</u> |